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7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임준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소55915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9. 09:55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소재 광양항전용도로 세풍교차로 합류지점 부근에서 초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 합류지점에서 본선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전손처리 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험금 3,52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 한다)에 원고의 구상금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다. 분심위는 2019. 8. 1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심의결정금액을 352,000원(= 3,520,000원 × 과실비율 1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과실비율에 따라 2019. 8. 21. 피고에게 구상금 249,800원[= 2,498,000원(= 피고 차량의 가액 2,800,000원 - 잔존물 가액 302,000원) × 과실비율 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무리한 합류 시도와 진로 변경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구상금 249,8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24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뒤에 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 차량’이라 한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화물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차량에 대하여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화물 차량의 과실은 원고 차량의 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합류지점에서 피고 차량의 합류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본선차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합류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초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차선으로 치우치는 듯하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본선차로 2차로로 곧장 급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이 본선차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본선차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본선차로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그대로 진입하여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충돌한 점, ③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이 사건 화물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어 위 화물 차량 앞에 피고 차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우측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본선차로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④ 한편 피고 스스로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 차량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돌 전후의 정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합류차로에서 본선차로로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2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금 지급일인 2019.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 판사 김평호